

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

기술표준원, 여름철용 제품 시판품조사 결과

개요

-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물놀이기구, 스포츠용 구명복, 선글라스, 썬캡 등 여름철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, 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,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효과가 95% 이하인 제품이 6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자외선 차단율 등의 안전·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다수 있다고 밝힘



※ 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함

※ 미국기준(ANSI Z80) : 패션용(70%이상), 일반용(95%이상), 특수용(99%이상)

ANSI(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) : 미국 표준화기구

- 이번 시판품조사는 여름철에 소비자의 불만이 많고 위해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들을 중심으로 5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대형 할인마트, 전문매장, 재래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7개 품목 134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함

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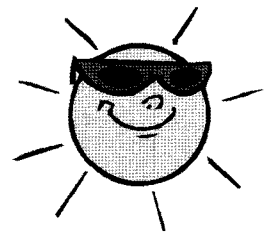
■ 품목별 조사결과를 보면,

- 물놀이기구는 27개 제품 모두 현재의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27개 제품 중 20개(74%)에서 0.2%에서 39.4%까지 광범위하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(DEHP, DBP 등)가 검출됨(국산 8개, 수입산 12개)

※ DEHP(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), DBP(디브틸프탈레이트), BBP(부틸벤질프탈레이트) : PVC재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

- 스포츠용 구멍복은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수평강도시험에서 버클 및 지퍼 연결부분이 기준 하중에 미치지 못하고 파손되어 위급시 안전장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- 안전·품질표시 상품인 선글라스는 80개(성인용 24개, 스포츠용 15개, 어린이용 41개) 제품 중 76개 제품이 안전·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일부제품은 자외선차단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표시를 56개 제품이 표시 하지 않고 있음
 - 특히, 어린이용의 경우 41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표시사항을 준수하였고, 40개(98%) 제품이 표시를 하지 않았음
 -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 시험결과, 제품가격과 차단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외선 차단율은 93%에서 99.2%까지 나타남
 - 또한, 99%이상으로 표기된 31개 제품 중 10개 제품만 99%이상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나, 실제 제품에 과장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
 - 자외선 차단율이 95%이하인 제품은 6개 제품이며, 모두 어린이용 제품으로 어린이 눈은 성인보다 연약하여 자외선 투과시 광각막염, 백내장 등의 치명적인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자외선 차단율 등 안전·품질표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- 또한, 썬캡, 자외선차단마스크, 파라솔, 골프웨어 등 4개 품목 16개 제품에 대한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에서는 썬캡은 4개 제품이 98.4~99.1%, 썬캡 1개(여아용) 제품이 79%로 나타났고, 자외선차단마스크는 94.4~99.9%, 파라솔은 96.7~98.9%, 자외선차단용 골프웨어는 93.6~99.7%로 나타남



조치사항 및 향후계획

- 기술표준원은 계절적 구매수요가 많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·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번에 여름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구명복 및 선글라스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판매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
 - 이번에 적발된 여름용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하여도 시·도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, 안전위해제품 제조·수입업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즉시 자진하여 판매중지하고 수거하도록 조치함
- 기술표준원은 불법·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임
 - 이번 시판품조사 결과 물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(안)을 7월 10일 입안예고함

시판품조사 결과

(단위: 건(적합/부적합/불법, 국산/수입))

품 목	조사건수	검사 결과			부적합(불법) 내역
		적합	부적합	불법	
물놀이기구	27(25/0/2)	25(11/14)	-	2(0/2)	· 안전인증검사미필
스포츠용 구명복	11(7/3/1)	7(5/2)	3(1/2)	1(0/1)	· 수평강도 · 자율안전확인신고미필
선글라스	80(1/79/0)	2(0/2)	78(5/73)	-	· 표시사항
3개 품목	118(34/81/3)	34(16/18)	81(6/75)	3(0/3)	